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속관할 변경〉

■ 박범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10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범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계속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Ⅲ. 검토의견

-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법원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99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u>서울고등법원</u> 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100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 <u>대전고등법원</u> ----- --.

- ☐ 현행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함.

-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려는 취지임.¹⁾

1) 2020년 5월 19일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법률 제5235호, 1996. 12. 30,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에 따른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고 등 법 원	지 방 법 원	지 원	관 할 구 역
대 전	대 전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금산군
		홍 성	보령시 · 홍성군 · 예산군 · 서천군
		공 주	공주시 · 청양군
		논 산	논산시 · 계룡시 · 부여군
		서 산	서산시 · 당진시 · 태안군
		천 안	천안시 · 아산시
	청 주		청주시 · 진천군 · 보은군 · 괴산군 · 증평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충청북도
		충 주	충주시 · 음성군
		제 천	제천시 · 단양군
		영 동	영동군 · 옥천군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1981년)부터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여 온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를 위해 제3행정부, 제6행정부, 제7행정부 등의 조직운용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대부분이 서울·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관계자의 소송 수행 편의를 위해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09